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국 유 재 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영 제5조의2 신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 보고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을 대장 가격이 500억원 이상(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거나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으로 정하고, 처분 보고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사용허가 취소·철회 절차 및 제한기간(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한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 및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가 다

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함

다. 사용허가 중인 재산의 사용·수익 일시 중단 및 손실보상(영 제34조의 2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중인 재산의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으로 정함.

라. 위탁개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수탁기관 확대(영 제38조제5항)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수탁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함.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0. ~ 7. 20.), 특기할 사항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이 500억원 이상(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거나,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말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처분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대장가격과 매각가격
2. 처분의 상대방
3. 처분사유

제12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을 “대장가격”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고,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 정보(물건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 허가 기간, 대장가격)
2. 업체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취소 또는 철회 사유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35조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보상액은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말한다.

제38조제5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

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이 500억원 이상(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거나,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말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처분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대장가격과 매각가격 2. 처분의 상대방 3. 처분사유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대장가격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고,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 정보(물건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 허가 기간, 대장가격)
2. 업체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취소 또는 철회 사유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 설>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 ④ (생략)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2. (생략)

⑥ ~ ⑦ (생략)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35조(사용허가 철회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 후단-----.

1.2.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보상액은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말한다.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1.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54